

## 전자관계법과 지방세정

박 정 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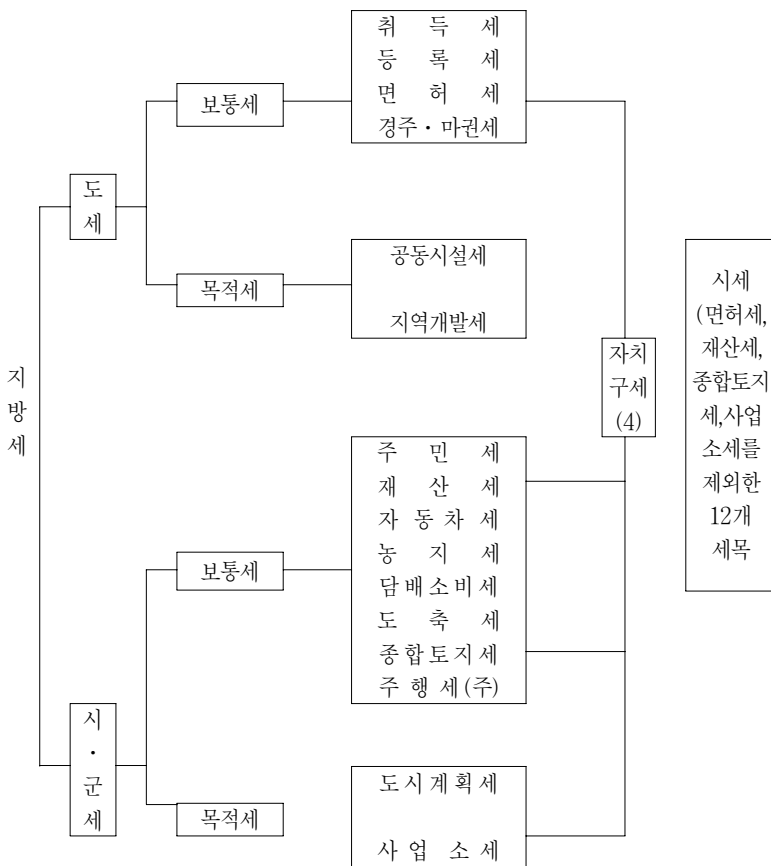
## I. 지방세제 일반

### 1. 우리나라 지방세의 구조

우리나라 지방세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현재 지방세의 구조는 16

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세와 시·군세(광역시의 군 포함)로 크게 분류된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며,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로 구성되고 목적세는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로 구성된다.

<그림 1>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



(주) 99.12.28 신설

시·군제도 역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며, 보통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주행세로 구성되고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로 구성된다. 그리고 시세(특별시세, 광역시세)는 도세와 시·군세의 전세목중에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제외한 12개 세목이다.

## 2. 지방세의 현황

<표 1>은 2000년(예산) 우리나라 지방세의 전체적인 구조와 세입을 지방세 체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 보면 전체 지방세 수입중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이며(22.2%) 취득세(15.3%), 주민세(14.3%) 순으로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지방세수입 18조

<표 1>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와 세입

| 세 목 별              |                 | 금액(단위:억원) | 구성비(%) | 비고   |             |
|--------------------|-----------------|-----------|--------|------|-------------|
| 계                  |                 | 185,209   | 100.0  |      |             |
| 도 세<br>(79,958)    | 보통세<br>(75,785) | 취득세       | 28,343 | 15.3 | 재산세 (부동산이전) |
|                    |                 | 등록세       | 41,040 | 22.2 | 재산세 (부동산이전) |
|                    |                 | 면허세       | 2,417  | 1.3  | 소비세         |
|                    |                 | 경주·마권세    | 3,985  | 2.1  | 소비세         |
|                    | 목적세<br>(4,173)  | 공동시설세     | 3,412  | 1.8  | 재산세 (부동산보유) |
|                    |                 | 지역개발세     | 761    | 0.4  | 재산세         |
| 시 군 세<br>(100,469) | 보통세<br>(89,173) | 주민세       | 26,541 | 14.3 | 소득세         |
|                    |                 | 재산세       | 6,782  | 3.7  | 재산세 (부동산보유) |
|                    |                 | 자동차세      | 20,456 | 11.0 | 재산세         |
|                    |                 | 농지세       | 22     | -    | 소득세         |
|                    |                 | 도축세       | 472    | 0.3  | 소비세         |
|                    |                 | 담배소비세     | 20,527 | 11.1 | 소비세         |
|                    |                 | 종합토지세     | 12,209 | 6.6  | 재산세 (부동산보유) |
|                    |                 | 주행세       | 2,165  | 1.2  | 소비세         |
|                    | 목적세<br>(11,296) | 도시계획세     | 8,033  | 4.3  | 재산세 (부동산보유) |
|                    |                 | 사업소세      | 3,262  | 1.8  | 소득세         |
| 과 년 도 수 입          |                 | 4,782     | 2.6    |      |             |

5,209원중 재산세 관련 지방세 비중은 65.3%를 차지하여 지방세 수입의 절대적인 부분을 점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보유 및 이전 관련 지방세(재산세)는 53.9%를 차지하여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지방세수입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99년수입기준)

| 구분  | 비율     |
|-----|--------|
| 서울  | 25.0 % |
| 광역시 | 21.5   |
| 도   | 21.9   |
| 시   | 19.3   |
| 군   | 4.5    |
| 구   | 7.8    |
| 계   | 100 %  |

상기 표에서 보는 대로 지방세 수입은 서울과 광역시가 절반 가까운 비율(46.5%)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어느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지방세(예산)수입을 국세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 구분  | 금액      | 비율      |
|-----|---------|---------|
| 국세  | 797,029 | 81.2 %  |
| 지방세 | 185,209 | 18.8 %  |
| 계   | 982,238 | 100.0 % |

상기 표에서 보는대로 조세의 배분구조가 국세편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취약성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 표는 각국의 총조세 대비 국세·지방세 비중이다.

| 구 분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
| 벨기에(1993)  | 92.7 | 4.8  |
| 덴마크(1993)  | 67.8 | 31.4 |
| 핀란드(1993)  | 69.7 | 23.6 |
| 프랑스(1995)  | 80.3 | 19.7 |
| 그리스(1993)  | 98.2 | 1.2  |
| 아일랜드(1993) | 97.2 | 2.4  |
| 이탈리아(1994) | 94.1 | 3.8  |
| 일본(1996)   | 61.1 | 38.9 |
| 네덜란드(1993) | 96.0 | 2.4  |
| 노르웨이(1993) | 72.7 | 22.3 |
| 포르투갈(1993) | 92.1 | 5.9  |
| 스페인(1993)  | 79.9 | 13.4 |
| 터키(1993)   | 89.4 | 8.7  |
| 영국(1996)   | 95.1 | 4.6  |
| 미국(1996)   | 57.9 | 42.1 |
| 독일(1996)   | 88.3 | 11.7 |
| 한국(1998)   | 80.3 | 19.7 |

자료 :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1999, p.18

오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연방제 국가체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국가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걸어온 우리의 경우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일본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II. 지방세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행정 관련 환경의 변화는 크게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라 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만큼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으며(선심성행정의 남발등)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98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16조 6,767원으로서 97년도에 비해 2,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IMF등의 영향)

사회전반에 정보화 물결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주민의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해

지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 활동에 대한 주민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행정 관련 정보의 요구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많은 권한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제공기능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편의 위주의 「작은정부 구현」을 목표로 1, 2차 행정전산망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1차 행정전산망사업('87-'91년)은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등 전국적 규모의 대국민 서비스에 관련된 우선업무(6개)와 총무처의 인사행정관리, 내부부의 종합토지세관리, 외무부의 외교정보관리 등의 30개 기관 94개 계획업무를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로 서비스 시간의 단축 등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2차 행정전산망 사업('92-'96년)은 행정업무의 전산화, 공동 활용체제 구축, 대민 서비스 확대, 기타 안전관리 및 전산자원에 대한 표준화 등으로 나누어 추진하여 왔다. 더욱이 '96년 7월 1일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의 전산화는 매우 빠른 속도

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전산망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앙부처 위주의 전산화사업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중앙과 지방행정기관간에 정보화 능력에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 III. 지방세정의 전산화

#### 1. 전산화의 개념

전산화라 함은 「컴퓨터화된 절차로서 의사결정자 및 조직관리자에게 의사결정 또는 조직관리에 필요한 지식, 정보, 자료등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진화하는 수작업업무를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화된 업무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이는 정보를 체계화하여 조직내의 운영과 관리 및 의사결정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행정전산화 사업은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중의 일환인데 다음과 같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는 전산화사업의 기획단계에서의 사전준비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준다고 하겠다.

내무부 지방세계국 주관으로 1992년 6월 시달한 지방세전산화사업계획은 충분한 사전준비나 관련부서와의 협의없이 시·군·구의 개별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제히 추진토록 하여 일선 시·군에서는 전산시스템설계 및 전산지식 부족 등으로 전산화효과를 별로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1993년 5월 내무부 지방기획국에서 지방세전산화를 포함한 시·군업무 전반을 전산화하기 위한 시·군·구 전산화기본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지방세전산화를 위한 사업이 이원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예산이 중복 집행된 결과를 가져왔으며, 동 계획에 따라 도입된 국산주전산시스템도 운용요원부족 등으로 시스템 도입 후 상당기간 정상가동을 못하거나 시스템을 과다 도입하여 미활용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계약 규격에 성능이 미달된 기기가 납품된 사례도 있었다.(감사원:1994, 2)

#### 2. 전자관계법과 지방세정의 전산화

정부는 지방세정의 선진화 차원에서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 입법 예고된 「전자정부구

현을 위한 법률」(2001.7.1 시행예 정)(2001년초 임시국회 통과전망)이 그 제도적 장치의 일환이다.

동법률 제4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은 전자정부(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천명하면서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당해 기관의 행정혁신과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간의 연계
2. 전자화 대상업무의 처리과정 혁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및 검정
5. 전자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국민 불만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신속한 개선

그리고 법제6조~14조에는 전자정부 구현과 운영의 원칙 9가지를 <표 2>와

같이 정하고 있다.

행정관리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제16조에는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하고(업무의 성격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전자공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되며(17조①)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2조2호) 또는 전자적수단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 송신하여야 한다(18조①)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관리의 전산화를 위해서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바 그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21조①).

1.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 정보

<표 2> 전자정부구현과 운영의 원칙

| 구분   | 원칙               | 내용   |
|------|------------------|--|
| 제 6조 | 국민편익중심의 원칙       |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 제 7조 |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 행정기관은 업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한다.  |
| 제 8조 | 전자적 처리의 원칙       |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 제 9조 | 보유정보공개 원칙        |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
| 제10조 | 행정기관의 확인 원칙      |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11조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12조 |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 제13조 |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의 원칙 | 행정기관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복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14조 |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 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 또는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화추 진위원회”라 한다)가 행정기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                      관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행정정보

한편 행정관리의 전산화는 별도의 보안대책(내부통제제도)이 긴요한 바 “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요구되는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 하도록 하고 있다.(26조①)

대민서비스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문서, 서면, 서류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1조)

둘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구축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32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민원인의 신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3조)

셋째,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서

고지서, 통지서등의 종이문서로 고지,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전자공문서로 고지,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4조)

넷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법령,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등 민원관련정보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있다.(35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전자신고제도(국세기본법 5조의2)는 위와 같은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조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국세분야에 우선적용되도록 입법되었으나 지방세에도 적용가능할 수 있는 법률적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서업무의 감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당해 기관이 취득, 작성, 유통, 보관하는 종이문서등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하고 있으며(37조) 이를 위해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38조, 39조) 문서업무감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41조)

#### 1. 의사결정과정의 쇄신과 전자화

2. 각종 신청·신고·제출 등의 간소화·전자화
3. 각종 고시·공고 등의 전자화
4.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교환 및 공동이용
5. 그밖에 문서업무의 감축을 위한 행정개선 및 전자화

이상에서 언급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 법률은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된 일 반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을 천명한 것들 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칙을 지방 세정에 구체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구 체적인 전략(지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 다. 이밖에 전자관계법으로는 정보화촉 진기본법(96.7.1시행)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등에관한법률(99.7.1시행) 및 전자 서명법(99.7.1시행)이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2에 의하 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 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 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 은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의료, 교육, 문

화 및 환경의 정보화등 공공분야의 정보 화를 추진하여야 하고(제11조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 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11조②), 제11 조②항은 지방세정의 전산화 추진의 법 률적 근거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시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자정부구현정책의 기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전자문서의 효력 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전자 신고제도 도입이 가능케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전자정부구 현을위한법률의 내용은 이러한 정보화 촉진정책의 일환이다.

### 3. 지방세 행정전산화<sup>1)</sup>

#### (1) 지방세전산화의 환경적 배경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란 세목별로 부

1) 「지방세 전산화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모형의 설계」, 지방행정연구 VOL9, NO4(95.2), 한국지 방행정연구원

과과정 및 징수과정, 그리고 체납자관리 과정의 업무를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산화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요구는 지방세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가. 부과조정단계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재산세적 성격을 가진 것은 장표류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부과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찾기 위하여 많은 자료를 뒤적여야 한다. 이때 시간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많은 인원이 필요하므로 예산상의 비용낭비현상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서 토지관련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건물관련세목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행정망자료와 연계된 것은 자동차세, 주민세(균등할)가 있으며, 면허와 관련된 세목은 면허세이다. 국세와 관련된 지방세목(소득세, 법인세)으로는 주민세(법인 및 개인사업자 소득할, 법인균등할)가 있다. 원천징수하는 것은 마권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주민세(소득할)가 있다(<그림 1>

참조). 이처럼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는 세목이 많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 의하여 각기 다른 장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많은 비용과 시간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부과단계에서 이러한 자료를 DB화시킴으로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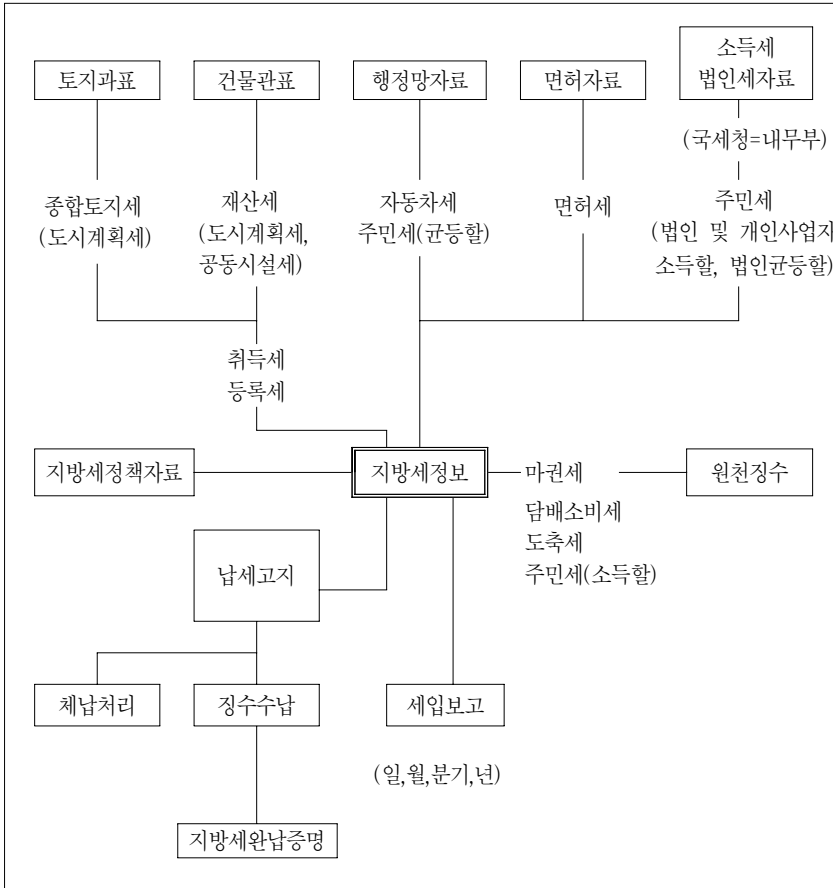
나. 징수 및 체납자관리의 문제점

이 단계에서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영수증을 수납대행기관과 시금고은행에서 직원이 분류하여야 하며, 다시 시청에서는 세목별, 개인별 납부세액을 일일이 수납부와 영수증을 대조, 확인하여 소인하여야 한다. 더욱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세목의 납부는 자연히 납기마감일에 집중되므로 소인 대상건수가 폭주하여 본래의 징수업무에 전념하기 곤란하다.

둘째, 부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발생 및 세액탈루의 소지가 있다. 담당공무원의 소인착오 또는 체납부 작성시 오류발생으로 이미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독촉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림 2> 지방세 정보시스템 모형도



셋째, 체납자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 워진다. 수작업으로 징수업무를 처리하 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변경시 이를 관리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 지방세전산화사업의 추진모형

지방세전산화사업은 전세목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각세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활용

되는 자료들을 DB화시킴으로써 공동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관련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건물관련세목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행정망자료와 연계된 것은 자동차세, 주민세(균등할)가 있으며, 면허와 관련된 세목은 면허세이다. 국세와 관련된 지방세목(소득세, 법인세)으로는 주민세(법인 및 개인사업자 소득할, 법인 균등할)가 있다. 원천징수하는 것은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주민세(소득할)가 있다. 이처럼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는 세목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동일한 자료를 DB화시킴으로써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모형도를 그리면 <그림 2>와 같다.

#### IV. 세법상 전자우편신고제도

지방세징의 전산화가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어 세법에 반영된 것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전자우편신고제도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1. 전자우편신고제도의 도입 내용

#### ① 개념(법제2조18호)

전자우편신고제도라함은 신고관련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신고에는 전화신고를 포함한다.(2001.7.1적용)

#### ② 신고일(법제5조의2)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기록된 때를 신고일로 한다.

#### ③ 신고·납부기한 특례(법제5조, 영제2조)

신고기한일에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 ④ 과세표준신고의 관할(법제43조)

전자신고는 관할세무서장외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다.

### ⑤ 접수증의 교부(법제85조의4)

접수증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가능하다.

## 2. 도입취지

과세표준신고서나 과세자료등의 서류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와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 제31조에 의한 전자적민원처리의 한 예이다.<sup>2)</sup>

## 3. 국세기본법의 지방세법에의 준용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전자우편신고제도를 지방세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 V. 지방세정의 전산화 관련 인프라구축

지방세정의 전산화촉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담당자 및 납세자들의 정보화마인드 제고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제반 환경적인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sup>2)</sup>

첫째, 공공기관에서 사용자들은 대부분 Word Processing 수준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분야에는 사용수준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E-Mail, 정보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H/W의 구축에 편중되어 있고 또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관련한 지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전산화에 관한 정책은 사용자들을 위한 실

2) 「정보화정책평가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전산화에 대한 네트워크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VOL6, NO1(96.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질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자의 수준에 입각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공기관내의 컴퓨터 사용혁신 확산을 위해서는 컴퓨터 관련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 촉진을 위한 상부관리자들의 관심이 요구되며, 특히 컴퓨터 관련지식이 동료간의 접촉을 통하여 습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대인관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컴퓨터 사용혁신의 확산에 있어서 선도자(집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선도자(집단)의 위치를 점하는 구성원 중 전산관련 요원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바, 이들을 육성·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이들과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 및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추종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들의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혁신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혁신의 확산은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연령이 많은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혁신의 확산이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확산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의 컴퓨터와 관련한 교육 및 전문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껏 공공기관에서의 컴퓨터 사용혁신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사용자의 측면에서 혁신의 확산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에게 컴퓨터와 관련한 워크샵, 프로그램 설명회, 또는 세미나와 같은 전문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 선발시 전산지식이 풍부한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조직 내부에서 혁신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전산직 공무원들의 더 많은 인원확보 및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부가하여 컴퓨터 지식이 부족한 구성원들의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또한 하드웨어(H/W)를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정보화 정책보다는 소프트웨어(S/W) 및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정보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지방세정의 전산화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정보화 관련 인프라구축 뿐만 아니라 보다 기본적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내부담당조직 및 담당자의 전문성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지방세분야의 전문성은 국제분야에 비해 뒤떨어져 온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세정의 전산화는 그것이 지향하는 효율성 못지 않게 그것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조직 및 인력의 질적 수준(Quality)제고가 전제되지 않

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정의 전산화는 그 목적이 세무행정의 효율화, 적절적으로는 징수비용의 절감등을 의도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나라 지방세구조의 취약성(부동산경기에 민감한 세입구조와 재산세의 주의 세입구조, 서울시와 광역시에 편중된 세입구조, 국세에 비해 취약한 세입규모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

###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法定相續主義(법정상속주의)

自由相續主義에 대한 말로서 相續人이 되는 者를 法律에서 정하고 그 자유로운 變更을 인정하지 않는 立法主義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民法에서는 身分相續으로서의 戶主相續은 徹底한 法定相續主義를 채용하고 있는 반면 財産相續에 관하여는 遺留分制度의 제한을 받는 自由相續主義를 先行시켰으므로 법정상속주의는 보충적인 地位에 놓이고 있다.

- 편집실 -